

[별지 제12호]

물 량 산 출 요 령

1.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으로 한정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달청이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소요량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소요량으로 한다.
 - 정미량 : 공사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량을 말하며, 도면물량이라고도 한다. 또한, 도면 물량에는 공제하지 않은 수량(부피과 면적·길이 등)을 포함한다.
 - 소요량 : 정미량+할증량(시공손실량)
 - ※ 소요량이란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운반, 절단, 가공 등 시공 중 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더한 양
4. 설계서의 정미량을 산출할 수 없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은 조달청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예, 슛크리트 리바운드량(모르타르나 콘트리트 분사 시 반발되는 양), 노무량, 할증비율(%), 부속자재량, 여굴량, 공제하지 않는 대상 등)
5. 입찰자는 토공 유동량(성토량, 사토량, 반입토량 등)의 산출방법 및 기준은 조달청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최종확인물량 및 입찰자의 물량수정은 물량산출근거의 물량산정방법(물량의 단위 및 소수점 처리)에 따라 단계별 물량 산정(수정) 및 최종물량산정(수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이 물량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적정한 소수점 처리기준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않는다.
7. 조달청은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물량산출유의서 등)를 작성·교부하여 모든 입찰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 및 데이터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본 물량산출요령과 물량산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물량산출기준에 따른다.
9.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란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설계서에 따라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10. 물량산출기준 간에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조달청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1. 측정하는 도구에 따른 기계오차,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개인오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입찰자의 주관적 물량수정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조달청 최종확인물량 확정 및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물량은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소수점 자릿수 및 지위(止位: 숫자가 끝나는 자리)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13.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 해석(제21조)
 - 가. 제21조제1항제1호 :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변경한 경우
 - 예시1) 설계구성 내용(표층+기층+노체)을 임의로 수정(표층으로만 구성)한 경우

- 예시2) 도로경계석 A타입, B타입의 물량이 합산되어 하나의 세부공종으로 작성된 물량내역서를 입찰자가 이를 구분하여 수정한 경우
- 나. 제21조제1항제4호 :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 설계서의 누락·오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공사비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물량내역서의 물량(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하는 경우는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
 - 설계서의 변경 예시
 - ① 설계서가 관계법령 또는 설계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 또는 설계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수정한 경우
 - ② 설계서 물량이 구조역학상, 활용상, 목적상 필요 없어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 ③ 경제적 시공을 사유로 물량을 수정한 경우
 - ④ 수정허용공종의 단가가 중복 또는 단가의 오류 등의 사유로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 ⑤ 현장조건(토질, 지하수위 등)의 사유로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 ⑥ 기타 설계서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
- 다. 제21조제1항제9호 :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아니하고,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물량을 물량신설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 예시1) 설계서(도면) : 우수관(100mm, PVC관), 물량내역서 : 우수관(100mm, PE관)인 경우, 우수관의 규격을 PE관에서 PVC관으로 수정하지 않고, 해당 세부공종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부적합
 - 예시2) 물량내역허용 세부공종 토사절취 100m³가 도면확인 결과 토사절취가 80m³이고, 연암절취가 20m³인 경우, 물량내역수정 시 토사절취 물량 80m³만 수정하고, 연암절취는 신설(물량신설공종)하지 않거나, 물량신설공종의 물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